

말레이시아로의 레토르트 처리 돼지고기 제품 수입 요건

- 1.0 제품 : 레토르트 처리 돼지고기 제품
- 2.0 동물 종류 : 돼지
- 3.0 용도 : 인체 소비용
- 4.0 수출국 : 모든 국가
- 5.0 수입 요건 :

5.1 수입허가서

레토르트 처리 돼지고기 제품 화물은 말레이시아로의 해당 제품 수입을 허용하는 말레이시아 검역·검사청(MAQIS)이 발급한 유효한 수입허가서를 동반해야 한다.

5.2 수의위생증명서

레토르트 처리 돼지고기 제품 화물은 수출국 관할 수의당국이 발급한 수의위생증명서(영문)를 동반해야 하며, 해당 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이 확인되어야 한다.

- 5.2.1 해당 국가 또는 구역은 수출일 이전 3개월 동안부터 수출일까지 탄저병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이어야 한다.
- 5.2.2 해당 육류는 구제역(FMD), 탄저병,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은 농장에서 사육된 돼지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 5.2.3 해당 육류는 수출국의 관할 기관이 승인하고 감독하는 도축장에서 도축된 돼지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 5.2.4 해당 돼지의 원산 도축장에 관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작업장명 : _____ 작업장
번호: _____
- 5.2.5 해당 육류는 생체 검사 및 해체 검사를 통과한 동물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돼지열병(CSF) 또는 기타 전염성·감염성 질병을 시사하는 어떠한 징후도 없어야 한다. 생체 검사 및 해체 검사는 정부 수의사가 직접 감독하는 수의사 또는 육류검사관에 의해 수행되었다.
- 5.2.6 레토르트 처리 돼지고기 제품은 위생적 조건하에 가공되었으며, 말레이시아 수의국(DVS)의 수출 승인을 받은 가공시설(해당 가공시설의 명칭, 주소 및 작업장 번호는 증명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에서 생산되었고, 수출국 수의당국의 지속적인 감독을 받아왔다.

- 5.2.7 각 레토르트 처리 돼지고기 제품은 F_0 값 3 이상(최소 121°C 에서 4분 유지)의 멸균값을 갖는 열처리를 통해 살균되었으며, 기밀 밀봉된 용기에 충전되어 상온에서 저장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상업적 멸균 상태에 도달하였다.
- 5.2.7 레토르트 처리 돼지고기 제품에는 화학적 보존제 또는 인체에 유해한 기타 물질이 처리되지 않았다.
- 5.2.8 레토르트 처리 돼지고기 제품은 인체 소비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수출 전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예방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5.3 표시 요건

모든 레토르트 돼지고기 제품은 모든 형태의 포장에 작업장의 세부사항(작업장 명칭 및 작업장 번호), 배치번호, 생산일자를 영어로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6 운송 및 양륙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각 레토르트 돼지고기 제품 화물은 수입허가서에 명시된 지정 양륙장으로 선박, 항공기 또는 기타 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

7 검사 및 검증

- 7.1 농장 또는 가공 작업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인 이전에 DVS(말레이시아 수의국) 공무원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관련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 7.2 본 수입요건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공식 문서는 말레이시아 도착 시 지정된 항만 또는 공항에서 말레이시아 수의국 국장, 주 수의국장 또는 DVS 또는 MAQIS의 공인 담당관에게 검증을 위해 제출되어야 한다.

8 시료 채취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돼지고기 제품 화물은 MAQIS의 공인 담당관에 의해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DVS 실험실에서의 시험을 위해 시료가 채취된다. 말레이시아에 도착한 모든 화물은 보류-검사-방출(Hold-Test-Release) 절차의 적용을 받는다. 말레이시아는 양성 결과가 나온 화물에 대해 수입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양성 판정을 받은 화물은 MAQIS법 2011(Act 728)에 따라 입국이 거부되거나 원산국으로 반송된다.

9 수입 중단

질병이 발생하거나 질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상기 요건을 위반한 수입이 이루어진 경우, 말레이시아 수의국 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육류의 수입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10 기타 조건

- 10.1 말레이시아 수의국(DVS)은 관련 당사자로부터 필요한 어떠한 문서 또는 상세 정보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신청자(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가 상기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못하거나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DVS는 신청을 거부하거나 승인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10.2 해당 작업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DVS 공무원에 의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관련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 10.3 해당 제품 화물은 말레이시아의 관련 법령 및 그 법령에 따라 관할 기관이 발하는 모든 지시, 명령, 요구사항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10.4 본 수입요건을 준수하더라도, 다른 말레이시아 관할 기관이 정한 기타 요건의 적용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1 수입 요건 변경 권한

말레이시아 수의국 국장은 위해평가에 근거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기 규정을 언제든지 변경할 권한을 가진다.

말레이시아 농업·식품안전부

수의국

(2024년 11월 22일)